

# 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50 연금저축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
□ 변경 사항: ① 제1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②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: 2026. 5. 13

□ 변경 내용

| 항 목  | 정정사유  | 정 정 전  | 정 정 후  |
|--|---|--|--|
| <b>요약정보</b>  |   |  |  |
| 투자비용   | 동종유형 총보수 최<br>근 기준으로 기재<br>제 13 기 재무제표<br>확정에 따른 갱신 | -  | 2026. 3. 31. 기준<br><br>2026. 4. 29. 기준                   |
| 투자실적추이(연평균<br>수익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 13 기 재무제표<br>확정에 따른 갱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| 2026. 4. 29. 기준  |
| 운용전문인력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| -  | 2026. 3. 31. 기준  |
| <b>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 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가. 운용전문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| -  | 2026. 3. 31. 기준  |
| 5. 운용전문인력<br>나. 운용중인 집합투<br>자기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| -  | 2026. 3. 31. 기준 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<br>투자위험<br>라. 이 집합투자기<br>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<br>형 | 제 13기 재무제표 확<br>정에 따른 갱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<br>액(97.5% VaR 모형 사용):<br><u>14.65%</u> |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<br>액(97.5% VaR 모형 사용):<br><u>14.25%</u> |
| 11. 매입, 환매, 전<br>환절차 및 기준가격<br>적용기준<br>나. 환매           | 환매수수료 부과 여<br>부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신 설)  | ※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<br>부과하지 않습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. 보수 및 수수료<br>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동종유형 총보수 최<br>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<br><br>-   | 2026. 3. 31. 기준<br><br>2026. 4. 29. 기준                   |
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         | 제 1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 |   |
|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br>나. 과세 |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       | 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br>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(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br>다만, <u>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u> 다만,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<u>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</u>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 | 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<br>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(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<br>다만, <u>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</u> (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)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 |

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재무정보           | 제 1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<u>2026. 4. 29 기준</u> |
|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| 제 13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| - | <u>2026. 4. 29 기준</u> |

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3. 집합투자기구의<br>운용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 13 기 재무제표<br>확정에 따른 갱신 | -  | <u>2026. 4. 29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1. 집합투자업자에<br>관한 사항<br>가. 회사 개요  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 | -  | <u>2026. 3. 31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집합투자업자에<br>관한 사항<br>다. 최근 2개 사업년<br>도 요약 재무내용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 | <u>제 27 기(2024.12.31)</u><br><u>제 26 기(2023.12.31)</u> | <u>제 28 기(2025.12.31)</u><br><u>제 27 기(2024.12.31)</u> |
| 1. 집합투자업자에<br>관한 사항<br>라. 운용자산 규모                | 최근 기준으로 기재               | -  | <u>2026. 3. 31. 기준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